

인천지방법원 2023. 4. 19 선고 2022가단2597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6. 27 선고 2023나62970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3. 4. 19 선고 2022가단259738 판결

전문

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

피 고 1. A 주식회사

2. B

3. C

4. D

피고 3,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

담당변호사 정강준

변론종결 2023. 2. 22.

판결선고 2023. 4. 19.

주 문

1. 피고 A 주식회사,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,107,822원 및 그중 149,849,141원에 대하여 2022. 8. 13.부터 2022. 9. 7.까지는 연 7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5. 1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. 5. 27. 접수 제1382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가.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5. 23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. 5. 23. 접수 제1334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9. 12. 13. 피고 A 주식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

148,500,000원, 신용보증기간을 2022. 12. 9.까지, 채권자를 기업은행 서초3동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대출예정금액을 165,000,000원(보증비율 90%)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,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 나. 피고 회사는 2019. 12. 13.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 서초3동지점으로부터 148,5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다. 이후 2022. 5. 26.경 피고 회사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22. 8. 4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에 대출금과 지연이자 합계 150,051,144원을 대위변제하였고, 그중 202,003원은 임의회수되었다.

라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발생한 구상금채무는 2022. 8. 12. 기준 합계 150,107,822원[= 잔여 대위변제금 149,849,141원(= 150,051,144원 - 202,003원) + 지연손해금 258,681원]이다.

마. 피고 B는 2022. 5. 19.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, 2022. 5. 27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13824호, 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바. 또한, 피고 B는 2022. 5. 23. 위와 같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,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,000,000원, 채무자를 피고 B, 근저당권자를 피고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13342호, 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, 을나 제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회사,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. 8. 12. 기준 회수하고 남은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50,107,822원[= 잔여 대위변제금 149,849,141원(= 150,051,144원 - 202,003원) + 지연손해금 258,681원]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, 피고 회사,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50,107,822원 및 그중 위 149,849,14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2. 8. 1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22. 9. 7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는 이미 구상금청구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불과 8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2. 5. 27.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'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'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,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,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(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6808 판결,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).

2)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10,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,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만듦과 동시에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점, ② 게다가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4,500만 원 중 1억 2,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 B의 재산이 감소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당시 피고 B의 재정적 상황을 보면,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 C 주장의 요지

이에 대하여 피고 C은, 동생인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E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60,000,000원의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피고 D 명의의 채권최고액 200,000,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그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해행위의 악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2) 판단

가)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,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

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. 나아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,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).

나) 살피건대, 피고 B가 피고 C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자 피고 D 명의의 채권최고액 200,000,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데다가(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마쳐진 피고 D 명의의 2022. 5. 23.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전에 마쳐졌다가 해지된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회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), 피고 C은 피고 B의 친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,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그렇다면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같은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는 이미 구상금청구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이후 불과 4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2. 5. 27.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

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,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다7873 판결,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다85161 판결,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다62991 판결 등 참조).

2) 살피건대, 피고 B가 머지않아 원고에 대한 1억 5천만 원 이상의 구상금연대보증채무 부담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던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B의 적극재산의 대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당시 피고 B의 재정적 상황을 보면,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 D 주장의 요지

이에 대하여 피고 D은,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존에 마쳤다가 해지된 피고 D 명의의 2020. 5. 6.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복구한 것에 불과하므로, 피고 D에게 사해행위의 악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2)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9호증, 을나 제1, 2, 4,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 D은 2020. 3. 25.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188,000,000원에 피고 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되, 매매대금 중 138,000,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,000,000원은 피고 B의 귀농정책자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, 피고 D은 위 매매대금 138,000,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B로부터 총 매매대금 188,000,000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고, 2020. 5. 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22. 2. 15. 위 근저당권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, 이후 피고 D은 다시 2022. 5. 23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,000,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, 피고 B와 피고 D의 사정에 의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은 그 당시까지 피고 B로부터 기지급한 위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고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, 피고 D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그렇다면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와 같은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

판결한다.

판사 고범진

별지